

의안번호	제515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24년 3월 5일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515
----------	-----

제출연월일 : 2024년 3월 5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2024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출연 개요

(단위 : 백만원)

출연기관	출연액			출연 필요성
	계 (A=B+C)	기정 (B)	금회추경 (C)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1,992	1,936	56	- '24년 국비 확보(5억원)에 따른 재원내역 및 도비 편성액 변경

※ 관계법령(출연근거)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도 서비스원의 사업) 및 제29조(보조금 등)

3. 주요내용

-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출연금 추가 지원 : 56백만원
 - 국비 확보액(500백만원) 및 당초예산 도비 편성액(1,492백만원) 반영
 - 인건비 증액(증 144백만원) 및 운영(감 23백만원)·사업비(감 65백만원) 조정에 따른 변경내역 반영

4. 관계법령 발취 : 붙임

1 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복지정책과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복지보훈팀	김경희	정영수	김정화	3012

기관명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출연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 장 : 연명모 ○ 기관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지 : 청주 흥덕구 공단로 87(복대동,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 규모 : 1개소(전용면적 379.8㎡) - 기관성격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법인 - 주된사업 : 민간 제공기관 지원, 사회서비스 관련 연구·조사,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수탁·운영 등 					
출연 사업비	○ 추가출연 지원금액 : 56백만원					
	○ 출연금 내용 (단위:백만원)					
	구 분	2023년 예산액 (출연액)	2024년			비고
			계(A+B)	기 정(A)	금회추경(B)	
	계	1,936	1,992	1,936	56	
충북사회서비스원 운영비 지원	1,936	1,992	1,936	56		
국비	968	500	-	500		
도비	968	1,492	1,936	△444		
출연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확보액(500백만원) 및 당초예산 도비 편성액(1,492백만원) 반영 ○ 인건비 증액(15명 → 18명, 증 144백만원) 및 운영(감 23백만원)·사업비(감 65백만원) 조정에 따른 변경내역 반영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조(시·도 서비스원의 사업) ① 시·도 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생략 - 제29조(보조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지도감독 부서인견 (중 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공공성 향상, 시군 사회서비스 격차 완화 및 취약계층 돌봄 공백 최소화 등을 위해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 지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첨부자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연기관 현황 3. 출연사업계획서 					

1-①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경영평가) : 해당없음
- (재정사업평가 및 감사결과) : 해당없음

2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 '23.6.1일 개원하여 시설 컨설팅,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컨설팅지원, 대체인력 지원사업, 지역사회보장계획, 종사자 보수 실태 조사, 돌봄모델 연구를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서비스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 중임
- '24년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국비 5억원 확보액과, 도비 당초예산 편성액 14.9 억원을 반영하여 출연계획 금액을 변경할 예정으로,
- 복지부 사회서비스 관련사업 수탁·운영, 출산 및 의료비 후불제 지원 등 도정 핵심사업 추진으로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의 업무 범위 및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 예산의 '원안의결'을 건의드립니다

3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내역	2023년 예산액(최종)(C)	2024년 변경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B-C)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1,936	1,992	1,992	-	56

4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여	여	부	여	여	여	여

1-② 출자출연 기관현황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근거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전화번호 : 043-820-3601 홈페이지 : cb.pass.or.kr	
주요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등기('22. 11. 24.) 개원('23. 06. 01.) 	기관형태	출연기관	
직원현황 ('24.3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5명	14명 * 별도 공무원 파견 2명	1	
임원	직책(직책명)	성명	소속(직위)	임기
	상임이사	연명모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22.11.24.~'25.11.23.(3년)
	비상임이사	김현진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2.11.24.~'24.11.23.(2년)
	"	김혜정	복지실천여성협의회 이사	'22.11.24.~'24.11.23.(2년)
	"	변창수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장	'22.11.24.~'24.11.23.(2년)
	"	유응모	오송종합사회복지관장	'22.11.24.~'24.11.23.(2년)
	"	윤경미	서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22.11.24.~'24.11.23.(2년)
	"	이규하	차미원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22.11.24.~'24.11.23.(2년)
	"	임진숙	한국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연합회장	'22.11.24.~'24.11.23.(2년)
	"	최현숙	충청북도학원장학회 이사장	'22.11.24.~'24.11.23.(2년)
	"	한규량	한국교통대학교 경영복지학부 교수	'22.11.24.~'24.11.23.(2년)
	"	최승환 (당연직)	보건복지국장	재임기간
	감사	노동영	변호사	'22.11.24.~'24.11.23.(2년).
	"	김경희 (당연직)	복지정책과장	재임기간
	주요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량있는 공급주체 진입·성장을 위한 민간 제공기관 지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관련사업 수탁·운영 충북형 운영모델 제시를 위한 사회서비스 연구 등 		
출연금		100백만원		
그 간 예산지원 현 황 ※운영비(국비 50%, 도비 50%) ※설치비(국비 100%)	2022년	운영비	156백만원	
		설치비	500백만원	
	2023년	운영비	1,936백만원	

1-③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업명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복지정책과		출연	1,992백만원 (국비 500, 도비 1,492)

□ 목적 및 필요성

- 우리도 출산율 증가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신규사업, 의료비 후불제 지원 등 도정 핵심사업 추진
-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민관 사회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道단위 컨트롤타워 구축·운영

□ 출연개요

- 사업명 :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출연액 : 1,992백만원(국비 500, 도비 1,492)
- 주요사업
 - 역량있는 공급주체 진입·성장을 위한 민간 제공기관 지원
 -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관련사업 수탁·운영
 - 중복형 운영모델 제시를 위한 사회서비스 연구 등
- 출연근거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 산출기초

- '24년 제1회추경 출연요구액 : 5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출연액 (A) (도비100%)	1회 추경예산(B) (국비 500 도비 1,492)	증감액 (C = B-A)	증감사유
계	1,936	1,992	56	
인건비	1,016	1,160	144	▶ 인원(15→18명) 증원
운영비	310	287	△23	▶ 광고비, 업무추진비 등 감액
사업비	610	545	△65	▶ 연구과제 및 사업비 조정

□ 변경사유

- 일상돌봄 서비스, 긴급돌봄, 대체인력지원사업 수탁 등 국가 위탁사업 수행에 및 도 복지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인력증원(3명) 필요
- 운영비(광고비, 사무관리비 등 감액) 및 사업비(보건의료·복지 플랫폼 구축 등 감액)조정 반영

□ 기대효과

- 다양한 민간지원 기능을 통해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
- 사회서비스의 공적기능 강화 등 사회서비스 제공의 구심적 역할 수행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사회서비스의 공적기능 제한 및 구심적 역할 부재 우려
-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따른 기관 운영 차질

참고 1 관계법령 발췌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시·도 서비스원의 사업) ① 시·도 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4.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5.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 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자문
 6.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7.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8.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
 9.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10. 그 밖에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 공공성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그 밖에 시·도 서비스원의 사업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보조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재원) 시·도 서비스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참고 2 예산 세부내역

구 분	2024년 출연동의(안) / 단위:천원			비고
	당초	1회추경(안)	증감	
합 계	1,935,720	1,991,721	56,001	
인건비	1,015,723	1,159,875	144,152	
기본급	608,474	698,262	89,788	
제수당	127,761	155,415	36,678	- 15명 → 18명 증원
정액급식비	25,200	28,560	3,360	
가족수당	5,280	10,560	5,280	
초과근무수당	29,922	47,717	17,795	월10시간
연차휴가수당	6,512	2,000	△4,512	퇴직자 발생 시, 지급
명절휴가비	60,847	66,578	5,731	
직급보조비	54,000	68,400	14,400	
퇴직연금적립금	66,139	75,801	9,662	
사회보험부담금	83,290	94,744	11,454	
평가급	76,059	67,253	△8,806	
일반운영비	310,237	287,045	△23,192	
사무관리비	152,189	146,786	△5,403	
공공운영비	46,900	40,846	△6,054	
행사운영비	3,000	3,000	0	
회의비	3,000	5,625	2,625	
복리후생비	29,640	16,920	△12,720	
광고선전비	10,000		△10,000	
여비	24,000	28,080	4,080	130천원×18명×12월
업무추진비	12,000	8,400	△3,600	
교육훈련비	7,700	7,200	△500	400천원×18명
수선유지교체비	15,848	24,148	8,300	홈페이지 관리 등
관서업무비	5,960	6,040	80	
목적사업(본부)	609,760	544,801	△64,959	
정책연구	120,000	211,288	91,288	
지역사회보장계획	15,000	30,924	15,924	
중앙- 시도 현안과제	15,000		△15,000	
기본 및 정책과제	90,000		△90,000	
종합재가센터 기능 정립		8,988	8,988	
충북사회서비스 연구 발간		16,734	16,734	
고독사 대응 방안		37,329	37,329	정책 발굴 기초자료 활용
2024 지역주민 욕구조사		32,075	32,075	정책 발굴 기초자료 활용
충북 청년실태 조사		72,012	72,012	청년정책수립 기초자료 활용
현안 대응 연구		13,226	13,226	공청회 등 도협력사업 활용
자체사업	489,760	333,513	△156,247	
사회서비스제공기관 안전점검	25,000	15,000	△10,000	
돌봄종사자 소진 예방	38,000	12,800	△25,200	소규모시설 종사자 건강지원
긴급틈새돌봄	43,000		△43,000	별도 국비사업으로 추진 예정
홈페이지 고도화	15,000		△15,000	수선유지교체비로 편성
사회서비스제공인력 교육 지원	63,000	35,200	△27,800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컨설팅	20,000	9,600	△10,400	
사회서비스 네트워크	5,000		△5,000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
보건의료·복지 플랫폼 구축	195,000	31,725	△163,275	사업수행인력을 정규직 인건비로 전환
병원 퇴원환자 사후관리	10,000	30,000	20,000	
지역사회보장계획 협력 사업	60,760	46,688	△14,072	
충북사회서비스 포럼 운영	15,000	18,000	3,000	지역현안 토론회 6회
소셜미디어 활용 홍보		2,000	2,000	
인권보호체계 구축 지원		20,000	20,000	
출산문화 조성 영상 공모		12,500	12,500	
복지법인·시설 재무회계 달력 제작		10,000	10,000	
임산부 심리·상담·건강 지원		90,000	90,000	